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
소액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2019년 7월 8일(월)부터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채무자 중 채무금액·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 ② 만 70세 이상 고령자
- ③ 10년 이상 장기 소액 연체자

※ 채무 :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이고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자
※ 소득 : 소득이 부양가족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 재산 : 보유재산의 순자산가액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이내인 자



지원내용

- ① 채무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면제
채권원금은 상각채권의 경우 70~90%, 미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감면
- ② 상환후 면제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 최소 3년 이상 상환하고,
조정후 채무액의 50% 이상 상환한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



※ 상각채권? 채무연체가 오래되거나 장기화되어 금융회사에서 채권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손실 처리한 채권
미상각채권? 금융회사가 손실 처리 하지 않은 일반채권

신청방법

1 전화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1397

2 방문상담 :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3 인터넷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관련 Q&A”



자주하는
질문

1.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신청기준 중 채무원금 1,500만원 기준은?

채무원금 기준은 채무조정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채권금융회사에 부담하는 원금합계액이 1,500만원 이하임을 의미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2.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의 판단 기준은?

‘연체시작일’과 채무조정 ‘접수통지일’을 비교하여 연체기간 10년 경과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연체시작일은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3.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신청대상 중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고 조건부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에는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4.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신청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별도의 심의 및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 내부심사 및 심의, 채권금융회사의 동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을 확정받은 후, 최소 3년 이상 이행 & 조정후 채무액의 50% 이상 상환 시 잔여채무를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